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어선의 무선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 통지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어선을 통한 위치 통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 제21조제3항은 통지 대상 어선 보다는 다른 어선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, 안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해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며,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58조, 부칙).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1조제3항 중 “알리고,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”를 “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8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해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안 부칙 중 “6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) ①·② (생략) <신설>	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, 전파혼신(混信),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,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

③ (생 략)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횃수 및 절차, 제3 항에 따른 위치확 인 방법, 수색·구조 기관 등에의 통보 방법 및 절차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제58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. 1. (생 략) 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 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해역별 위 치통지 횃수 및 절 차, 제4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, 수 색·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 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8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<단서 신 설>	다. ④ · ⑤ (개정안과 같음) 제58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다만, 제2 1조제3항에 따라
--	--	---

3. ~ 8. (생 략) ⑤ ~ ⑦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 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부칙 <u>이 법은 공포 후 6</u> <u>개월이 경과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	다른 어선을 통해 위치를 통지한 경 우는 제외한다. 3. ~ 8. (현행과 같 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부칙 -----<u>1</u> <u>년</u>----- -----.
---	---	--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8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4.

발 의 자 : 서천호·김선교·조경태
김예지·최보운·정성국
정희용·우재준·박덕흠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(船團)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,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

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·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도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,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, 제16조 및 제21조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어선의 무선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 통지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어선을 통한 위치 통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 제21조제3항은 통지 대상 어선 보다는 다른 어선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, 안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해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며,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58조, 부칙).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조업시기와 구역을 정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

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, 전파혼신(混信),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8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해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</u> <u>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</u>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</u> <u>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에</u> <u>대하여 조업 시기와 구역을 정</u> <u>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</u> <u>도록 명할 수 있다.</u>
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</u> <u>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</u> <u>조업,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</u> <u>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	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의 제한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의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 <u>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</u> <u>도지사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</u> <u>하여 대형 어선사고가 연달아</u> <u>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</u> <u>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</u> <u>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해역에</u> <u>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</u>

③ (생 략)

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) ① · 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, 수색·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

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1조(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무선설비의 고장, 전파혼신(混信), 통신권 이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리고 위치통지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어선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해당 어선을 대신하여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제2항 및 제3항-----제4항-----

-----.

제58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략) 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3. ~ 8. (생략)	④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. 다만,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어선을 통해 위치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. 3. ~ 8. (현행과 같음)
---	--